

「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. 25(월)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1. 27(수)
- 상정일자 : 2016. 02. 01(월) 제2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 정성문)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-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은, 토지취득으로 매입 1건에 1,363㎡ 186,786천원입니다.
가. 토지 취득
 - ① 매입 : 대관령면 청사부지(사유지) 매입 (재무과)
 - ▷ 대관령면 횡계리 산334-39외 2필지 1,363㎡ 186,786천원(공시지가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□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 의하면

-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은
 - 건물취득(신축, 증축, 취득)과 처분의 경우 10억이상
 - 토지취득은 1건당 토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,

- 『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』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
 - 군수는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함.
 -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.

□ 제출된 계획안의 세부내용을 보면

- 『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』 은
 - 토지취득 매입 1건에 1,363㎡로 추정가액은 186,786천원이며
- 『대관령면 청사부지(사유지) 매입』 으로
 - 대관령면사무소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위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

- 『대관령면 청사부지(사유지) 매입』 은
 - 대관령면사무소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편입 필지에 대하여 임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 및 원상복구 요구 등의 민원해결과, 향후 효율적인 청사관리 차원에서 토지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심사주요 의견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계획안 1부.

2016년 취득·처분대상 재산목록(1차)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기준가격	취득 시기	취득사유	비 고 (소유자)
	지목	소재지	수량				
	토지취득 (1건, 3필지)			1,363	186,786		
	소계 (3필지)			1,363	186,786		
1	임야	대관령면 황계리 산334-39	1,289	164,606	상반기	대관령면 청사부지(사유지) 매입	이율*외6
	전	" 335-3	5	514			안호*외2
	전	" 335-35	69	21,666			안호*외2